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1. 3. 19.(금) 14:00 ~ 15:10

2. 회의장소 : 공사 사무연구동 A동 3층 대회의실

3. 출석위원

4. 결석위원

(1) 위원장 ●●●

(1) 외부위원 ♠♠♠

(2) 외부위원 ◆◆◆

(2) 내부위원 ♣♣♣

(3) 외부위원 ■■■

(4) 외부위원 ●●●

(5) 내부위원 ♠♠♠

(6) 내부위원 ♣♣♣

5. 참석자 : 간사, 제안부서장, 물류관리팀 ○○○, 구매팀 ◆◆◆

6. 의안번호 : 제2021-02호

7. 제출자 : 물류관리팀장

8. 소관부서 : 물류관리팀

9. 기록 : 구매팀

의 안

제2021-02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계약방법 등 심의

제 안 사 유

- 심의안건 : 제2021-02호
- 심의사항 :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골자
 -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 ~ 2024. 6. 30.까지 (2021. 7. 1. 착수 예정)
 - 다. 사업내용 : 우리공사 물류운영구간 내에서 공사 생산제품과 조달물품 등의 운송, 보관 및 부대 서비스
 - 라.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위탁관리비
 - 마. 사 업 비 : 일금일천칠백칠십구억사천구백이십사만육천원정(₩177,949,246,000)
 - 바. 추정물량 : 3,690,119톤
 - 사.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 아.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자. 입찰참가자격
 - 1)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상기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직접제출 및 e-mail 제출하도록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

의 결 사 항

제2021-02호 : 원안 의결

※ 계약특수조건 내용 수정·보완 요구

- 제1조 계약특수조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 수정
- 제2조 제10항 1차 물류'의 개념 정의 시, 출발지 명기
- 제11조, 제15조 제3항 및 제19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고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구별
 - 위약벌, 페널티 등의 유사용어 통일
 - 위약금 관련 별도 합의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제17조 제1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한' 등 법률적 표현 사용 및 내용의 명확화
 - '계약상대방의 직원, 대리인, 종업원, 관련 종사자' 등의 표현을 '이행보조자'로 통일하여 사용
- 기타 각 조항별 용어 통일 정비 등

발 언 내 용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성원이 되었는지 보고해주십시오.
간사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p>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p> <p>오늘 본 회의에 앞서서 전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간사(구매팀장)	<p><2021년도 제1회차 계약심의위원회 요약 보고></p>
위원장	<p>전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p> <p>의견이 없으시면 전차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의안번호 제2021-02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 계약방법 등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부서의 장께서 부의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제안부서장 (물류관리팀장)	<p><제2021-02호 부의안건 설명></p>
위원장	<p>우리공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3년간 장기로 운영되고 사업예산 또한 상당히 큰 계약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다루게 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습시다만, 설명 들으신 사항이나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p>
◆ ◆ ◆ 위원	<p>계약금액이 1,700억 이상의 아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특수조건도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특수조건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계약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	<p>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2항에 보면 ‘합의한 기준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되어있는데 제7조와 제19조 제4항에서도 페널티와 위약벌 사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용어도 페널티, 위약법 또는 지연배상금으로 특수조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했는데, 제19조(위약벌) 조항에서 1항부터 3항까지는 위약벌을 다루고, 4항에서는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명시하면서 페널티를 양사가 추가 합의해서 정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계약에서 위약벌 이외에 페널티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지연배상금과는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계약의 특수성 때문이신건지 왜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시는 궁금합니다.</p>
◆◆◆ 위원	<p>첨언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들이 통일정비가 필요합니다. 제19조 내용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위약벌은 계약상대자의 채무자가 약정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쪽 나오거든요. 별도로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계약내용을 더 잘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약벌 규정을 뒀다면, 위약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약벌 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라고만 나왔는데, 위약벌 규정을 명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은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p> <p>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하려면 앞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상호 불이익이라든지, 앞의 규정과는 달리 이 경우에 강제하기 위해서 위약벌을 규정한 것이니까 별도로 앞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위반사항 제재비용 말고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약금을 총 매대금의 얼마라든가 하는 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만약 위약벌 규정에 적용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별도의 금액을 또다시 합의해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법제의 통일정비와 관련해서 우선 제1조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p> <p>계약특수조건(안) 제1조에서 ‘본 계약의 목적은’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들이 하나의 법규입니다.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합니다.</p> <p>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제10항에서 ‘1차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출발지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p> <p>다음에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앞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일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제15조에 보시면 사고품의 처리에 대한 부분에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운송 또는 보관 등 계약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운송 도중의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제3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의 발생원인,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묻겠다는 규정 취지가 있다면, 사고발생의 원인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어느 것을 겨냥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추궁 전체의 사고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는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제17조에 보시면 변상책임이 또 나오는데, ‘계약상대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법률용어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전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이라고 된 부분도 명확히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한’으로 사유라는 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p> <p>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손실, 손해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대리인에 의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용어를 사용해서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에 의한 과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관련 종사자’, ‘종업원’ 등의 표현도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제안서 평가항목을 보시면 배점이 정량적 평가가 10점으로 나와 있고, 정성적 평가가 70점으로 나와 있어서요. 원래 이런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정성적 평가점수를 이렇게 높게 주신건지, 정량평가 점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 원 장	이 부분은 본 계약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여러 가지 구성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관리팀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제 안 부 서 장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량 20, 정성 60, 그리고 가격 20이 기본 점수인데, 10점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시킨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진행 과정에서 공사 물류운영과 관련된 각종 단체와 협회, 기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3개년 간 1,780억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도내 물류업체, 물류 관계 기관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도외판매 물류운영을 계기로 도내 물류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조정을 해서 정성평가부분에 도내물류 개선 부분에 배점을 반영했습니다.
위 원 장	참고로 물류운영 입찰에 지난 기수 기준 약 10개 사 정도의 규모 있는 업체가 참여합니다. 모든 업체를 놓고 보면 정량평가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고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제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 ◆ 위 원	물류관련 업무처리 실적의 경우에는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참고해서 반영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 부 서 장	정성평가 항목 안전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 ♠ ♠ 위 원	제안요청서 33페이지에 ‘제주도내 협력업체 보유 차량만 인정’이라고 해서 운송수단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는데요. 제주도내 차량이 중복등록 가능한 겁니까? 10개 정도의 제안사가 들어올 때, 제가 A기업, B기업, C기업 이렇게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입니까?

발언자	발언내용
제안부서장	네, 가능합니다. 협력업체와 MOA 수준의 협약서를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참가업체와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그렇다면 10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할 때, 열심히만 노력하면 10개사 하고도 모두 협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안부서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p>좁혀서 생각해보면 화물 운송차량인 경우에는 도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박회사까지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제주항 선박회사는 좀 많이 있지만 성산, 서귀, 애월, 하귀 등에는 선박회사가 하나 내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느 물류운영사와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선박회사가 계약된 물동량에 대해서 같이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컨소시엄을 확정해서 입찰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p>의견주신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잠시 휴회하겠습니다.</p>
위원장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제안요청서 37페이지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을 보시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40페이지 평가지표에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배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평가부분을 추가해서 사회적 책임 부분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요?
위원장	혹시 재해발생 관련 내용이 신인도 등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제안부서장	반영여부 검토하겠습니다.
□ □ □ 위원	도내 관련업체 의견에 ‘입찰참가자 저단가 투찰에 대한 대책’ 부분이 있는데, 기초단가를 산정하실 때 저단가에 대한 고민을 어떤 걸 하셨나요? 4페이지입니다. 투찰할 때 참가업체들이 저단가로 투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까?
제안부서장	<p>기초단가 산정 시 실제로 운영되는 경로와 구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물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시장가격도 물론 고려해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투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단가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p> <p>‘도내업체 상생방안’과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제안요청서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내업체들이 저단가 계약에 참여해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약단가 상으로 확보해드리거나 보장을 해드릴 방법은 없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 ‘도내업체 수익 보장 방안’과 33페이지 ‘도내물류 개선’ 부분, 그 부분을 세분화한 41페이지의 ‘선사·하역사 등 도내 물류업계 상생협력 방안’ 부분에서 배점을 반영했습니다.</p>
□ □ □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정량 10점, 정성 70점, 가격 20점인데, 주로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주요 낙찰요인이 어디에서 결정되니까?
제안부서장	지난번 입찰을 예로 말씀 드리면, 가격부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실제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부분에서 좀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 □ □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안부서장	네. 그리고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가격 20, 정성 70, 정량 10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 □ □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정성을 70점 준거죠?

발언자	발언내용
제안부서장	네,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 □ 위원	최저가 낙찰 때문에 질의도 했었는데, 업체들이 투찰할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안부서장	업체별로 입찰할 때마다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 차이가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평가에 들어갈 때 득점을 보면 제시한 가격의 차이에 비해 실제 받은 점수의 차이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 □ □ 위원	그러니까 가격보다 정성적 평가가 최종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는 거지요?
제안부서장	네, 지난번 사업자 입찰 때에는 그런 부분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p>저희들이 평가항목을 구성하면서 제주도내업체와의 상생방안 관련 부분들을 넣도록 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입찰의 특성상 가격이 전혀 감안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에 따라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지난번 입찰에서도 최저가격을 썼던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잘 만나와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못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p> <p>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전원	없습니다.
위원장	<p>그러면 지금까지 주셨던 의견들 정리해보겠습니다.</p> <p>계약특수조건 제1조의 내용을 ‘본 조건은 공사의 물류운영사업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 구체적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로 하고요, 제2조 제10항에서 1차물류 정의 시 출발지 없이 내륙거점으로부터 되어있었는데, 출발지를 공사 공장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p>제4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제15조 제3항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추가해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p> <p>그 다음 제17조, 제17조 제1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용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에서 ‘~로서’라는 불필요한 구어체가 들어간 것 같아서 법률용어로 ‘선량한 관리자의’로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p> <p>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용어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p> <p>사유, 이유 이렇게 혼용된 용어는 한가지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p> <p>용어 중에 ‘계약상대방의 직원, 대리인, 종업원, 관련 종사자’ 이렇게 된 부분을 ‘이행보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p> <p>그리고 제11조와 제19에서 위약벌, 페널티 등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위약금은 별도의 추가 합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p> <p>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p> <p>이 시간 이후에도 정리를 하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p> <p>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p> <p>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해드린 대로 계약특수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위 원 전 원	네 동의합니다.
위 원 장	그러시면 의안번호 제2021-02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특수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